|  |  |  |
| --- | --- | --- |
|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경인사취발[2015]186호  각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 각 관련기업: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의 통지>(인사부발[2014]76호), <새로운 형세하에서 취업·창업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5]23호)의 정신을 관철 및 실행하고 실업보험의 실업예방, 취업촉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기업의 취업 안정화 사회책임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여 일자리 안정을 기하는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기금에서 일자리안정보조금(이하 '일자리보조금'으로 약칭)을 지급한다.  2. 일자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규정된 액수의 실엄보험비를 전액 납부한 기업이어야 한다.  (2) 직전연도에 감원이 없었거나 감원율이 직적연도 연말 북경시의 도농등기실업율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2.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그 직원이 직전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비 총액(북경시 사회보험관리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정)의 40%를 일자리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일자리보조금은 주로 직원생활보조금, 사회보험비 납부, 일자리 전환 교육, 기능 강화 교육 등 관련 지출에 사용한다.  3.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보험가입지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3) 처음 신청을 제출하는 기업은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제공;  (4) 기업 서약서;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5.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류를 집중적으로 접수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마치고 보조대상기업 명단과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심사 후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1주간 공시하여 공시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비준내용을 회답한다. 시(市) 재정국은 실업보험기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시(市)급 부서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보조금은 연 1회 신청한다. 2014연도에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2015년 9월 6일~16일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의 구체적인 신청시간은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한다.  6. 각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일자리보조금을 지급받는 합병·구조조정기업, 과잉 생산성 해소기업 및 낙후 생산력 탈락기업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기업의 일자리 변화 추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근로자 집단의 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자금 관리·사용 등 상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규범성과 실업보험기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재정국은 적절한 시기에 정책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 및 보완한다.  7.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관련 문건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을 적법하게 정산,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내부감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업체와 개인이 이 통지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억류, 유용하거나 조작을 행한 경우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환급을 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8.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연말까지 시행한다. <<고용업체의 일자리 안정화 보조금 시범사업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통지>(경인사취발[2014]69호), <실업보험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업의 직원소질교육을 지원할 것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의견>(경인사능발[2013]104호), <실업보험의 기업 직원소질교육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통지>(경인사능발[2014]156호), <실업보험의 기업 직원소질교육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보충통지>(경인사능발[2015]10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9.이 통지는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재정국, 시(市) 발전개혁위원회, 시(市) 경제정보화위원회가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해석을 책임진다.  첨부: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3. 기업 서약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북경시재정국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북경시경제정보화위원회  2015년 8월 26일  **관련 첨부문서:**  첨부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첨부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첨부 3: 기업 서약서 |  | **关于失业保险支持企业稳定岗位有关问题的通知**  京人社就发〔2015〕186号    各区、县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财政局、发展和改革委员会、经济和信息化委员会，各相关企业：  　　为贯彻落实《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关于失业保险支持企业稳定岗位有关问题的通知》（人社部发〔2014〕76号）、《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国发〔2015〕23号）精神，充分发挥失业保险预防失业、促进就业作用，激励企业承担稳定就业的社会责任，现就失业保险支持企业稳定岗位有关问题通知如下：  　　一、对采取有效措施不裁员、少裁员，稳定就业岗位的企业，由失业保险基金给予稳定岗位补贴（以下简称“稳岗补贴”）。  　　二、企业申请稳岗补贴应具备以下条件：  　　（一）依法参加失业保险并足额缴纳失业保险费；  　　（二）上年度未裁员或裁员率低于上年末全市城镇登记失业率。  　　三、对符合条件的企业，按照企业及其职工上年度实际缴纳失业保险费总额（依据北京市社会保险管理信息系统中记载的数据确定）的40%给予稳岗补贴。稳岗补贴主要用于职工生活补助、缴纳社会保险费、转岗培训、技能提升培训等相关支出。  　　四、符合条件的企业可向其参保所在地区县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提出申请，申请时需提供以下材料：  （一）企业稳岗补贴申请表；  （二）上年度企业减少人员情况表；  　　（三）首次提交申请的企业提供营业执照副本复印件；  　　（四）企业承诺书；  　　（五）其他需提交的材料。  　　五、区县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集中受理企业申请材料后，5个工作日内上报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10个工作日内完成审核，确定补贴企业名单和补贴金额。审核后将拟享受稳岗补贴的企业名单等相关信息在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上公示一周，公示无异议的，下达批复。市财政局负责按失业保险基金拨付程序拨付补贴资金。区县社保经办机构接到市级部门拨付的补贴资金后，应及时将补贴资金拨付企业。  　　稳岗补贴同一年度内申请一次。2014年度符合条件的企业可于2015年9月6日~16日提出申请，以后年度的具体申请时间将在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上公布。  　　六、各区县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对享受稳岗补贴的兼并重组企业、化解产能过剩企业以及淘汰落后产能企业进行重点跟踪，及时了解企业岗位变化动态，监测职工队伍稳定情况。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定期对享受补贴企业的资金管理使用等情况进行专项检查，以确保政策的规范执行和失业保险基金的安全使用。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市财政局适时开展政策绩效评估，根据实际调整完善政策。  　　七、享受补贴企业应按照国家法律法规及有关文件要求，依法依规核算、管理和使用补贴资金，建立内部控制制度，加强内部审计与监督，明确责任，专账管理，不得挪作它用。对于违反本通知及国家有关规定，弄虚作假，截留、挪用补贴资金的单位或个人，由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责令退回下拨的补贴资金，并按照有关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法律责任。  　　八、本通知自颁布之日起执行，执行至2020年底。《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关于印发<开展用人单位稳定就业岗位补贴试点工作的实施办法>的通知》（京人社就发〔2014〕69号）、《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北京市财政局关于拓展失业保险功能支持企业开展培训提升职工素质的意见》（京人社能发〔2013〕104号）、《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关于扩大失业保险支持企业开展职工培训试点工作的通知》（京人社能发〔2014〕156号）、《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关于失业保险支持企业开展职工培训试点工作的补充通知》（京人社能发〔2015〕106号）同时废止。  　　九、本通知由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市财政局、市发展和改革委员会、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根据各自职责负责解释。    附件：1、业稳岗补贴申请表  　　 2、上年度企业减少人员情况表  　　 3、企业承诺书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2015年8月26日    **相关附件：**  [附件1 企业稳岗补贴申请表.doc](http://www.bjrbj.gov.cn/xxgk/zcfg/201508/P020150831382744108844.doc) [附件2 上年度企业减少人员情况表.doc](http://www.bjrbj.gov.cn/xxgk/zcfg/201508/P020150831382744321367.doc) [附件3 企业承诺书.doc](http://www.bjrbj.gov.cn/xxgk/zcfg/201508/P020150831382744491685.doc) |